

3. 김제시라·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12. 제84회김제시의회 임시회
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총무과장 도인기)

가. 제 안 이 유

- 김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폐지에 따라 리·통장 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읍면동 분리·통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(안 제2조제5항)
- 리·통장 임명 절차 중 “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”를 “주민총회에
서 선출된 자”로 규정함 (안 제3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, 김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폐지(2001. 11. 12)에 따라 리·통장 임명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(질문) 오인근,황영석,임영택,김석준 위원

- 제3조 제4항의 개정내용중 현실적으로 리통장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출된 자 중이라면 복수인데 맞은 것인가?

- 현행 조례상 리통장의 자격에서 연령이 하한선은 있으나 상한선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?

○ (답변) 도인기 총무과장

- 주민총회에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혹 임명요건에 불 부합될 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 순위 자 까지 복수 추천을 받기 위함입니다.

- 연령의 상한선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현재 여건으로 보아 재고해 볼 사항이라 생각 됩니다.

5. 토 론 요 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참석위원 전원찬성
으로 원안 가결.